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예고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 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관 7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추가, 변경, 삭제 등 일괄 정 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중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변경, 삭제하고,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함
 - (안 제1조) 영동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
 - (안 제2조)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 - (안 제3조)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
 - (안 제4조)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

- (안 제5조)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- (안 제6조)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
- (안 제7조)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 - 다. 보내실 곳
 - 수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영동군의회(조례심사특별위원회)
 - 전 화: 043)740-3033, FAX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	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
	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」
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・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영동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영동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42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51조"로 한다. 제2조제1항제4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113조부터 제116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126조부터 제129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131조"로 한다.

제2조(「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다음부터 "영"이라 한다) 제52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"로, "영동군의회(다음부터 "의회"라 한다)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(다음부터 "감사"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다음부터 "조사"라 한다)"를 "영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"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의회가 영동군(다음부터"를 "영동군의회(이하 "의회"라

한다)가 영동군(이하"로, "감사를 할"을 "행정사무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를 할"로, "(다음부터"를 "(이하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조사"를 "행정사무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(다음부터"를 "(이하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"제113조부터 제116조"를 "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1 26조부터 제129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"를 "법 제131조"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6호) 중 "영 제42조제4호"를 "영 제44조제1항제4호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지방자치법(다음부터 "법"이라 한다) 제9조"를 "법 제13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법 제41조제3항"을 "법 제49조제3항"으로, "영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50조부터 제52조"를 "영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46조부터 제53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법 제41조 제3항"을 "법 제49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"자의"를 "사람의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"을 "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영 제43조제4항"을 "영 제46조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법 제41조 제4항"을 "법 제49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12조 중 "영 제46조제1항"을 "영 제49조제1항"으로, "영 제47조"를 "영 제50조"로 한다.

제3조(「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56조제1항 및 제62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64조제1항 및 제71조"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다음부터"를 각각 "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윤리 및"을 "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"으로 한다.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「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영동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"「지방자치법」제33조"를"「지방자치법」제40조"로 한다.

제5조(「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영동 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38조제2항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 항"로 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"의회사무과장"을 "사무과장"으로 한다.

제6조(「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53조·제54조·제56조"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44조ㆍ제45조 및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

한다) 제54조"를 "제53조·제54조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법 제47조제2항"을 "법 제56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47조제2항"을 "법 제56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영 제54조"를 "법 제53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 · 6월"을 "5월 · 6월"로 한 다.

제8조제2항 중 "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원"을 "지방의회의원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법 제45조제2항"을 "법 제54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 제41조"를 "법 제49조"로 한다.

-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한다.
- 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- 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의안의 제출 및 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위 위회가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.

- 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이때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.

제7조(「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35조제1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3조제1항"으로, "임기개시"를 "임기 개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지방자치법」제35조제3항"을 "법 제43조제3항"으로, "제2호서식"을 "별지 제1호의2서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.
-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동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7조와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겸직금지)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 및 그 기관·단체 가 설립·운영하는 시설의 대표, 임원,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 (자문위원회는 제외)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영동군이 출자・출연(재출자・재출연을 포함)한 기관・단체

- 2. 영동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・단체
- 3. 영동군으로부터 운영비·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·단체
- 4. 법령에 따라 영동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(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)의 임직원
-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 제8조(징계 등)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와 같다.
 - 1.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2.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
 - 3.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4.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7조(「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[별표]

<u>징 계 기 준(</u>제9조 관련)

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	적용기준
1. 겸직신고 위반	○ 겸직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보를 받은 자)	경고
	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
	○ 겸직 허위신고	경고, 공개사과
	- 미신고, 허위신고	
	○ 겸직 시임권고 불이행 (법 제43조제6항)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2. 영리행위 제한	○ 영리행위 제한 위반	경고, 공개사과, 출석정지
(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)	○ 수의계약체결 제한 시항 불성실신고 (윤리심사 후 2회 통보를 받은 자)	경고
	- 신고지연, 변경신고 해태 등	
	○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	경고, 공개사과
	- 미신고, 허위신고	

영동군의회의원 겸직(변경)신고서							
	소속정당		선 거	지 역	구		
성	한 글		구 분	비례口	대표		
명	한 자		싱	l년월일			
	기관・단체명						
	직 위		フ]て	<u>}</u>			~
	수행업무내역						
겸	분 야	농수산 □, 상공업 □, 건설업 □, 서비스업 □, 교육 □, 전문직 □, 기타 □					
직	영리성 여부	여부 영리 □, 비영리 □					
내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□, 보수 미수령 □							
숑	الملت المات	근로소득					원
	보수 수령액 (연간)	근로소득 이외 소득					원
	(11)	계					원
	주 소				전화병	번호	
「지방자치법」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(변경) 사항을 신고합니다.							
		년 -	월	일			
		영동군의회의원			(인))	
d	경동군의회의	장 귀하					

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

	소속정	당	선 거	지 역 구	
성	한	그	구	비례대표	
명	한	자	상	l년월일	

「지방자치법」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영동군의회의원 (인)

영동군의회의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영동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자</u>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</u>
<u>치법」제42조</u> 에 따라 영동군의	<u> 치법」제51조</u>
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	
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	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범위) ① 영동군의회 또는	제2조(범위) ①
위원회에 출석・답변할 수 있는	
영동군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	
음 각 호와 같다.	··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지방자치법」제113조부터	4. 「지방자치법」제126조부터
<u>제116조</u> 까지의 규정에 따른	제129조
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	
5. <u>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</u> 의 규	5. <u>「지방자치법」제131조</u>
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2조(「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	행		개	정	안	
제1조(목적) 이	조례는	「지방자	제1조(목적)			「지방자

지법 시행령」(다음부터 "영"이라 한다) 제5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(다음부터 "의회"라 한다)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(다음부터 "감사"라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다음부터 "조사"라한다)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.

제2조(감사) ①의회가 영동군(다 경음부터 "군"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대한 <u>감사를 할</u> 때에는 감사특별위원회(다음부터 "감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되,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할수 있다.

② ~ ⑥ (생 략)

제3조(조사) ①의회는 재적 의원 지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제1항의 조사 요구가 의결되

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
령 제53조
영동군의회가 실시하
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
<u>사</u>
제2조(감사) ① <u>영동군의회(이하</u>
"의회"라 한다)가 영동군(이하
<u>행정사무감사(이하</u>
<u> "감사"라 한다)를 할</u>
<u>(°)</u> ō}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조(조사) ①
행정사무조사(이하 "조사"라 한
<u>다)</u>
② (현행과 같음)
3

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조사특별위원회(다음부터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,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수 있다.

④ ~ ⑦ (생 략)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) 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(생략)
- 「지방자치법」<u>제113조부터</u> <u>제116조</u>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
- 3. <u>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</u>의 규 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
- 6. 영 제4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, 기관, 단체 및 법인
- ② (생 략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) 기 (가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(다음부터 "법"이라 한다) 제9 조에 규정된 사무와, 다른 법령에서 군에 위임된 사무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.

<u>(০) ই</u> }	
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제5조(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) ①	
3. <u>법 제131조</u>	
<u>4</u> . <u>영 제44조제1항제4호</u>	
② (현행과 같음) 제6조(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) ① <u>법 제13조</u>	

- ② (생략)
- ③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한 감사는 영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.
- ④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도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경우, 같은 항 뒷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회나도의회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자료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한다.
- 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
 본회의·감사위원회·조사위원
 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
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
 확인을 하거나, 보고 또는 서류
 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
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
 그 사무에 관계되는 <u>자의</u> 출석
 ·증언·및·의견진술을 요구
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있어 현
 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
 류의 제출, 관계인의 출석·증
 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

(2) (연행과 같음)
③법 제49조제3항
<u>영 제41조부터 제44조까</u>
지의 규정과 영 제46조부터 제5
<u>3圣</u> .
④법 제49조제3항
 .
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
<u>사람의</u>

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, 그 해 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- 제11조(과태료) ① <u>법 제41조제5</u> <u>항 및 영 제43조제4항</u>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.
 - ② 의장은 <u>영 제43조제4항</u>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해당 증인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 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 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

③ • ④ (생 략)

제12조(징계)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<u>영 제46조제1항</u>에서 규정한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나 조사를 하거나, <u>영 제47조</u>에서 규정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「영동군의회 회의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과태료) ① <u>법 제49조제5</u>
<u>항 및 영 제46조제5항</u>
② 영 제46조제4항
··
1. (현행과 같음)
2 법 제49조제4항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징계)
<u>영 제49조제1항</u>
영 제50조
0 11001

제3조(「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자치</u>	제1조(목적)
<u>법」제56조제1항 및 제62조</u> 에	법」제64조제1항 및 제71조
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	
의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	
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영동군의	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
회(<u>다음부터</u> "의회"라 한다)는	<u>০</u>] ত্ৰ্ট্-
재해대책, 청원, 중요 조례안 등	
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	
특별위원회(<u>다음부터</u> "위원회"	<u>০</u>) ক্ট
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
②의회는 의원의 <u>윤리 및</u> 징계	② 윤리강령과 윤
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	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
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	
다.	.
③・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장과 간사의 직무) ①	제5조(위원장과 간사의 직무) ①
・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
	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

<u>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</u> <u>다.</u>

제4조(「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자</u>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</u>
<u>치법」제33조</u> 와 같은 법 시행령	<u> 치법」제40조</u>
제33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	
에 대한 의정활동비・월정수당	
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	
함을 목적으로 한다.	

제5조(「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	제1조(목적)「지방자치
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동	법」 제46조제2항
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	
으로써,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	
바지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분	
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	
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	
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	
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	
를 목적으로 한다.	

제6조(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)	제6조(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의원과 <u>의회사무과</u>	② <u>사무과장</u>
<u>장,</u> 전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	
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	
다. 단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	
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	
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직무를	
대행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「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자</u>	제1조(목적)「지방자
<u> 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</u>	<u> 치법」 제53조·제54조·제56</u>
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	조
따라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	
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	
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정례회	제2조(정의)
등"이란 영동군의회(이하 "의	
회"라 한다)가 「지방자치법」	
(이하 "법"이라 한다) <u>제44조ㆍ</u>	<u>제53조·</u>
제45조 및 법 시행령(이하"영"	<u>제54조</u>
<u>이라 한다) 제54조</u> 에 따라 개회	

하는 다음 각 호의 집회를 말한다.

1. · 2. (생략)

제4조(연간 회의 총일수) ① 의회 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<u>법 제47</u> <u>조제2항</u>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6조(회기) ① 의회가 정례회 등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<u>법 제</u> 4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각각 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•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7조(집회일) ① 정례회는 <u>영 제</u> 54조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집회일에 개회한다. 다만,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
 일 전·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
 을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에
 따른 5월·6월이나 11월·12월
 중에서 해당 사유를 밝혀 정례

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제	4조(연간 회의 총일수)	1	
		<u>법</u>	제56
	조제2항		
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
제	6조(회기) ①		
		법	제56
	<u> 조제2항</u>		
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	② (현행과 같음)		
제	7조(집회일) ①	법	제53
	<u>조</u>		
			•
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	②		
	<u>5월 · 6월</u>		

회의 집회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등 각각 조정할 수 있다, 이경우 그 이전 임시회의 의결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추인(追認)의결을 받아야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)

- ① (생략)
-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해당선거일과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그 집회시기에 관하여 본회의의의결을 거쳐 9월·10월 중으로변경할 수 있다.
- ③ ④ (생 략)

제9조(집회공고 등) ① (생 략)

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제출될 경우에는 <u>법</u> 제45조제2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그 요구일과 달리 기본일정

	③ (현행과 같음)
제	8조(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)
	① (현행과 같음)
	②
	지방의회의원
	<u> </u>
	·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	9조(집회공고 등) ① (현행과 같
	승)
	②
	<u>법</u>
	<u>제54조제3항</u>

에 맞추어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구일을 집회일로 공고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10조(처리안건 등) ① 제1차 및 지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영 제5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안건과 그 밖에 발의·제출되는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.

② <u>법 제41조</u>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시기는 「영동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」제2조제3항에 따른다. ③ · ④ (생 략) <<u>신 설></u>

<u>.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처리안건 등) <u>① 제1차 및</u>
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
의 안건을 처리한다.
<u>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</u> 조
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
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인
<u>건</u>
<u>2</u> 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
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
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
<u>는 안건</u>
② 법 제49조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의안의 제출 및 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의원 이 발의한다.

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서

	명을 받아야 한다.
	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 소관 사
	항에 대해서만 의안을 제출할
	수 있으며, 이때는 위원장이 제
	<u>안자가 된다.</u>
<u>제11조</u> ・ <u>제12조</u> (생 략)	<u>제12조</u> ・ <u>제13조</u> (현행 제11조 및
	제12조와 같음)

제7조(「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겸직신고) ① 의원이 당선	제5조(겸직신고) ①
전부터 「지방자치법」제35조	「지방자치법」(이하
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	<u>"법"이라 한다) 제43조제1항</u>
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<u>임기개</u>	
<u>시</u>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 그	<u>임기 개시</u>
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	
임 후 15일 이내에 영동군의회	
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에	
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	
② 의원이 <u>「지방자치법」제35</u>	② <u>법 제43조제3항</u>
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	
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	
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	
분하되,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	

- 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
- ③ ④ (생 략)
- 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6 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<신 설>
- 제7조(관리인 등 겸직 금지) ① 의 원은 영동군 및 공공단체와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된 시설이 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이 될 수 없다.
 -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 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- -----별지 제1호의 2서식----.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 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동군의회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 - 제7조(겪직금지)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 및 그 기 관・단체가 설립・운영하는 시 설의 대표, 임원,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(자문위원회는 제외)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영동군이 출자・출연(재출자 · 재출연을 포함)한 기관·단 체
 - 2. 영동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・단체
 - 3. 영동군으로부터 운영비·사 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 관・단체
 - 4. 법령에 따라 영동군수의 인

제8조(징계 등)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.

- 1.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- 2. 겸직을 하는 것이 「지방자 치법」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
- 3.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

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

 건
- 4. 의원이 영동군 및 공공단체

 와 영리목적 거래
- 5. 의원이 영동군과 계약체결
- 6.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

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(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)의 임직원

-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 야 한다.
- 제8조(징계 등)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 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써 징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1.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2.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실시 한 사임권고를 거부
 - 3.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
 - 4.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